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 발의: SNS 사업자 책임은 더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는 더 철저히

이유진 독일 라이프치히대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학 석사

1. 들어가며

독일 연방의회는 6월 18일 독일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DG 이하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에서도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며 미디어 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2017년 10월 발효된 지 만 3년이 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규정과 이의제기 절차, SNS 사업자의 강화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독일에서 벌어진 혐오 사건과 유럽연합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배경과 맥락 속에서 진행됐다. 독일 법무부가 제출한 발의안을 통해서 그간 독일 사회에서 이뤄진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둘러싼 담론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경과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사업자가 플랫폼에 올라온 위법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위법 여부가 확실한 경우 24시간 내에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NS 사업자는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라 처리된 사안에 대해 통계를 내고 독일어로 투명성보고서(Transparenzbericht)를 발행해야 한다.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입법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 특히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다. SNS 사업자가 벌금 부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판단 없이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과잉차단(Overblocking)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후 이뤄진 평가¹⁾를 보면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이 미미하여 신고 자체도 적기 때문에 과잉차단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는 않았다.

연방 법무장관 크리스티나 람브레히트는 지난해 6월 임명되자마자 네트워크 법집행법 이행 태만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200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유튜브와 트위터 등과 비교해 페이스북 이용자의 신고 건수가 확연히 적은 게 문제가 됐다. 네트워크 법집행법상 신고처를 찾기 힘들게 배치해놓는 등 SNS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²⁾ 람브레히트 장관은 이후에도 꾸준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왔다. 이후 독일 법무부가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을 내놓기까지 여러 국내·외적 맥락이 뒷받침되어 있다.

3. 개정안의 국내·외적 배경

가. 다시 발생한 극우주의자의 혐오범죄

2019년 10월 9일 독일 작센안할트주 소도시 할레의 한 유대교당에서 극우주의자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7세였던 슈테판 발리에트는 총기와 폭탄으로 무장하고 예배가 진행 중인 유대교당에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이후 그는 유대인과는 상관없는 행인 2명을 살해하고, 추격 전 끝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극우주의자의 명백한 반유대주의 테러 공격으로 독일 전역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들어 극우주의자들의 난민 및 외국인 혐오를 이유로 한 범죄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 사건은 명백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시도였기 때문에 독일 사회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훨씬 더 컸다. 나치의 트라우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용의자는 범

1) 심나리 (2019).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1년, 혐오표현 규제책으로서의 평가. <언론중재>, 통권150호.

2) 페이스북은 법무부의 벌금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며, 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행 전 실시간 게임 스트리밍 사이트인 트위치(Twitch)에 자신의 반유대주의 성향을 밝히고 범행을 생중계하면서 충격을 더했다. 앙겔라 메르켈 연방 총리는 사건 발생 다음날 “극우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사법제도의 수단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³⁾했다.

할레 테러 이후 연방정부는 극우주의와 반유대주의, 혐오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총체적인 법 개정예 착수했으며, 2월 19일 “극우주의와 혐오범죄 대처를 위한 법안(Gesetz zur Bekämpfung des Rechtsextremismus und der Hasskriminalität)”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법안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러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하는 내용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주거지등록법, 텔레미디어법,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 등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범죄 가해자의 추적을 빠르게 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다. 특히 극우 및 혐오범죄의 조직과정이나 확대 양상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네트워크 법집행법과 텔레미디어법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했다.

3) 참고 URL: <https://www.bundeskanzlerin.de/bkin-de/mediathek/bundeskanzlerin-merkel-ueber-den-anschlag-in-halle-1680532?mediathek?query=>

나.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개정안 적용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은 또한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Richtlinie über audiovisuelle Mediendienste, AVMD-RL) 개정안의 국내법 적용과도 관련이 있다. 이 지침은 유럽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및 제반 규정에 관한 것으로 영상물 소비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반영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⁴⁾됐다. 개정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영상 공유 플랫폼 상의 불법 콘텐츠 대책을 위한 공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트위치 등 게임 영상과 같은 특정 테마만 다루는 플랫폼도 적용대상이 되었다. 이 유럽연합 지침은

〈그림 1〉 크리스티나 람브레히트 연방 법무장관



오는 9월 19일까지 각 회원국의 국내법으로도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적용대상 또한 영상 공유 플랫폼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은 이처럼 독일 내부적으로도 심각해지는 극우 및 혐오범죄 대처, 외부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발의되었다.

현행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르면 시행 후 3년이 되는 해에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정식 평가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발의가 예상보다 이르다면서, 평가 결과를 먼저 기다려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미 파악된 부분의 결론이 개정안에 추가된 것”이라며 “개정안은 지금까지 나온 각 SNS 사업자의 투명성보고서와 벌금 부과 과정을 통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 참고 URL: http://kocca.kr/mexport/bbs/view/B0000204/1935494.do?searchCnd=&searchWrds=&cateTp1=&cateTp2=&useAt=&menuNo=203152&categorys=4&subcate=405&cateCode=0&type=&insNo=0&questionTp=&uf_Setting=&recovery=&option1=&option2=&year=&categoryCOM062=&categoryCOM063=&categoryCOM208=&categoryInst=&morePage=&delCode=0&qtp=&searchGenre=&pageIndex=2#none

4.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람브레히트 연방 법무장관의 머리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을 통해 SNS상에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모든 이용자가 동법에 따른 위법 게시물 신고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신고 절차도 간편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협박을 받거나 모욕당한 사람들은 SNS 상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청구권 집행도 간편화한다. 협박이나 모욕에 대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이들은 필요한 정보를 보다 더 확실하게 간편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부당한 게시물 삭제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본인의 게시물이 삭제된 이들은 SNS 사업자에 삭제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삭제 결정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한다.”⁵⁾

독일 법무부가 발의한 동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권리 강화, 둘째 신고 절차 개선, 셋째 정보청구권 강화, 넷째 투명성보고서 강화 등이다.

가. 이용자 권리 강화

자신의 게시물이 삭제되었거나 적법하지 않게 신고되었을 경우 이용자는 해당 SNS 사업자에 삭제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SNS는 이용자에게 재심결과를 개인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SNS는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부당한 삭제나 계정 차단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

(1) 이의신청 절차 도입

신고된 게시물이 삭제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용자들 간, 혹은 이용자와 SNS 사업자 간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가 도입된다. SNS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게시물의 삭제 및 유지 결정을 재심의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심 결과는 모두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의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경우, 이용자는 삭제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위법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용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5) 참고 URL: https://www.bmjv.de/SharedDocs/Artikel/DE/2020/040120_NetzDG.html



이의신청 절차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데, 예를 들어 SNS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라 삭제되었을 경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SNS의 결정 사항을 메일로 안내받으면, 해당 메일에서 바로 이의신청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의신청을 통한 재검증은 1차 결정을 내린 검사자와 다른 검사자가 수행해야 한다. 이의제기 결과가 법적 절차를 같음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는 이의제기 결과에 대해서도 원한다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2) 독일 내 소송 대리인 명시

현행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라 SNS 사업자는 위법 게시물 유포와 관련해 독일 법원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 서면을 받을 수 있는 독일 내 소송대리인을 명시해 놓아야 한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의미 있는 조항으로 평가받는데, SNS 사업자가 대부분 독일 외 본사를 두고 있어서 그동안 사법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독일 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SNS 사업자에 독일 내 주소지와 소송 담당자를 명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이의신청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도 SNS 사업자의 독일 내 소송 담당자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독립적인 중재기구를 위한 기반 마련

이용자와 SNS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민간중재기구 설치 및 위임에 대한 조항도 좀 더 자세히 추가했다. 민간중재기구를 통해서 당사자들은 더욱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중재기구를 둘 수 있다' 정도의 조항만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민간 중재기구의 수행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재기구 인증을 위한 조건 사항을 규정한다. 동법 개정안에 제시된 민간 중재기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중재기구는 독일에 소재한, 재정이 확실한 법인이어야 함.
- 중재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중재담당자의 자격이 보장되어야 함.
- 중재절차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역력이 확보되어야 함.
- 중재는 중재 규정 및 중재 절차 규정 등을 바탕으로 간단하고 저렴하고 공평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함.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재기구의 연락처와 업무범위, 중재 규정 등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함.

다만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 따른 동영상 공유 플랫폼 관련 분쟁은 민간기구가 아닌 국가 차원의 중재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나. 신고 절차 개선

SNS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위법한 게시물을 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독일 내 서비스되는 SNS 플랫폼을 보면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른 게시물 신고처가 불친절하게 구현되어 있다. 이는 동법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며, 페이스북에 벌금을 부과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 메인 페이지에서는 네트워크 법집행법 관련 사안을 바로 찾을 수 없으며, 하단의 이용약관 항목을 클릭해야 한다. 이용약관 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시 하단에 작은 크기로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이라고 안내된 곳을 한 번 더 클릭해야 하며, 마우스를 한참 내리거나 또다시 클릭해야 신고처를 찾을 수 있다. 신고처 또한 별도의 버튼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문단 내 하이퍼링크로 표시되어 있어, 사실상 이용자가 찾아서 들어가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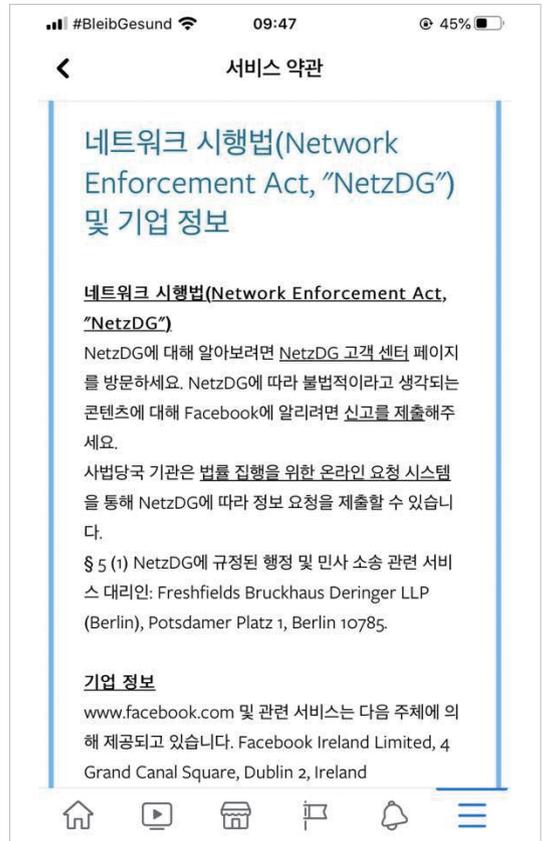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하고, 신고하려는 게시물의 URL을 직접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한다. 독일 형법상 어느 법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직접 선택해야 한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위법 게시물을 발견한 순간부터 신고를 완료하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것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 또한 SNS 자체 커뮤니티 규정이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 하단에 이용약관과 함께 바로 네트워크 법집행법 안내사항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이런 복잡한 절차는 네트워크 법집행법이 요구하는 사항과 맞지 않다”면서 “개정안에서는 신고처를 찾기 쉽게 만들고 누구나 간단히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예를 들어서 해당 게시물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SNS 사업자가 자체 커뮤니티 규정 위반 신고를 받을 때 이미 이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다. 정보청구권 개선

정보청구권 개선 항목은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과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은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개정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연방 법무부는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른 위법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 확인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역할과 SNS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림 2〉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법집행법에 따른 신고처. 여러 번 클릭해야 찾을 수 있으며, 위 문단 내 '신고를 제출' 링크를 클릭해야 신고할 수 있다.



출처: 페이스북(www.facebook.com)



SNS에 올려진 헐바, 모욕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게시물의 피해자들은 SNS 사업자에게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나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SNS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해도 된다고 허락하지만, SNS 사업자들은 정보 제공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SNS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또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연방 법무부는 피해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고 있으며, 효율적인 정보청구권 집행을 위해서 법원이 정보 제공 여부를 허락할 때 동시에 SNS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명령하도록 했다.

라. 투명성보고서의 설득력 강화

(1) 통계 세분화

동법에 따라 SNS 사업자가 반년에 한 번씩 발행해야 하는 투명성보고서 관련 의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화된다. 그동안 보고서를 보면 해당 기간 동안의 신고 및 처리 통계만 제시된 경우가 많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직전 보고서 기간 수치와 비교해 변동사항과 사업자 측에서 예상하는 변동 근거를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이의신청 관련 통계 또한 제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규모와 함께 재심을 거쳐 다시 복구(Put-backs)된 게시물의 통계도 밝혀야 한다.

(2) 학술적 목적을 위한 데이터 제공 현황

SNS 사업자는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독립된 연구기관에 익명화된 데이터를 제공했는지, 얼마나 제공했는지 여부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법집행법을 통해 온라인의 극우 및 혐오범죄 양상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연방 법무부는 “그간 시행된 네트워크 법집행법 피드백에 따르면 불법적인 혐오발언이 종종 특정 그룹을 향해 있으며, 특히 여성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많다”면서 “학자들은 익명화된 데이터 접근을 통해 어떤 그룹이 불법 게시물의 주요 타깃이 되며, 불법 게시물 작성자들이 어느 정도로 일치하고 조정된 행동 양식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인식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SNS 사업자가 삭제한 게시물이 형법뿐만 아니라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에 의거 인종이나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과도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보고서에 밝히도록 했다.

이는 네트워크 법집행법 관련한 학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SNS 사업자는 학술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특히 가해자의 행동 양식이나 조직화 여부 등을 직접 언급한 것은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응 정책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SNS 사업자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연방 법무부는 이와 관련 “대규모 사업자들이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파악하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인 시스템(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삭제되거나 차단될 게시물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기본적인 작동방식과 인공지능 업무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의 의의

연방 법무부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먼저 그간 제기되었던 비판 지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과잉 차단의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고 규모 등을 고려하면 과잉차단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SNS 사업자가 법에 따른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성했느냐를 판단할 뿐, 게시물을 삭제하는 개별 판단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다. 또한 SNS 사업자는 불법 게시물을 판단할 때 인증된 자율규제 기구에 결정을 맡길 수 있으며, 정치적 사상 논쟁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표현이나 풍자 게시물의 위법 여부와 같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인해 벌금 압박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SNS 사업자가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게시물을 손쉽게 삭제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가능성 또한 새롭게 도입될 이의제기 절차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어 네트워크 법집행법이 SNS 사업자에게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등 ‘사법기구’의 역할을 떠넘긴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이용자가 처벌되는 게 아니며,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이나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도 호스팅 제공자가 이를 삭제할 의무를 지닌다.”면서 “SNS 사업자가 불법적인 게시물을 인식하고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게 옳으며,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 판결은 당연히 독립된 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에서는 SNS의 신고 시스템 구축과 검증, 게시물 삭제 및 추후 평가 등에 대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는 선제적으로 감독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정 요구를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부는 사후적인 억제조치만 할 수 있었을 뿐, 미래지향적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부는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실행을 위한 감독 및 명령 권한을 가지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6.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안 평가

해당 법무부 개정안은 6월 18일 연방의회에서 의결됐다. 법무부 개정안 발의부터 의결까지 다양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3년 전 처음 시행할 때 제기되었던 주요한 비판 지점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 사회에서 극우파들의 준동을 넘어 심각한 혐오범죄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⁶⁾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국면과 맞물려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해당 법의 필요성은 충분히 받아들여진다. 일부에서는 더욱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업계 측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콘라드아데나워재단 다프네 볼터는 “플랫폼의 불법적인 게시물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형사소추를 위한 절차를 고려하고,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개정안도 충분하지 않다. 불확실성이 더욱 개선되어야 하고 투명성도 더 강화되어야 하며, 게시물 삭제 과정 또한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⁷⁾고 강조했다. 독일 정보통신협회인 비트콤 측은 “개정

6) 2019년 10월 발생한 할레에서의 반유대주의 테러에 대응해 연방 법무부가 지난 2월 19일 혐오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패키지를 내놓은 바로 그날 공교롭게도 인종주의자의 총기난사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인 하나우(Hanau)에서 한 인종주의자가 터키식 물담배를 할 수 있는 시샤바 앞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 등 총 10명을 살해했다. 9명은 모두 이주 배경을 가진 독일인과 외국인이었으며, 1명은 가해자의 어머니다.

7) 참고 URL: <https://www.kas.de/de/kurzum/detail/-/content/das-netzwerkdurchsetzungsgesetz-2020-reloaded-aber-auch-verbessert>

안은 불확실성을 더 야기하고 있다. 게시물 삭제 절차에서 기준 등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유럽 연합 지침에 따른 동영상 공유 플랫폼과 네트워크 법집행법이 적용되는 SNS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⁸⁾이라고 지적했다.

7. 나가며

현행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물론 개정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유지되는 지점은 SNS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독일어로 독일인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면서도 본사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이유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법적인 상황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다. 현행법에 따라 SNS 사업자는 독일 내 소송대리인을 명시해야 하고, 독일 내 위법 게시물 처리 보고서를 반년마다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다. 동법이 요구하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페이스북에 거대한 벌금을 부과한 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서는 SNS의 책임과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SNS 사업자는 이제 그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역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는 민간 중재기구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참고 문헌

- 1) 연방 법무부의 네트워크 법집행법 개정 발의안 및 법무부 설명자료 URL: https://www.bmf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RegE_Aenderung_NetzDG.pdf?__blob=publicationFile&v=2; https://www.bmfv.de/SharedDocs/Artikel/DE/2020/040120_NetzDG.html
- 2) 극우주의와 혐오범죄 저지를 위한 법률 발의안 URL: https://www.bmfv.de/SharedDocs/Gesetzgebungsverfahren/Dokumente/RegE_Bekaempfung_Hasskriminalitaet.pdf;jsessionid=3ED8618BAA9F1A68F34F5B0B6CEE8080.1_cid289?__blob=publicationFile&v=4
- 3) 그 외 출처는 각주 표기

8) 참고 URL: <https://www.spiegel.de/netzwelt/netzpolitik/netzdg-kabinett-beschliesst-neue-beschwerderechte-in-sozialen-netzwerken-a-ca8d2804-d8b5-40c2-84bc-6c1359a36b2e>